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13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2. 21.

판 결 선 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07,841,330원, 지방교육세 82,886,420원, 농어촌특별세 41,443,2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투자신탁 설정계약,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의 감면

1) 원고[1]는 2013. 12.경 주식회사 B[2](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집합투자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도록 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며, 수익자는 50인 미만으로 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 제9조 제19항, 제188조, 제229조 제2호가 정한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명칭 : 'C', 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를 설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수익자들에게 판매되었고,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는 그 판매대금을 수령해 두었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로부터 납입받은 신탁원본으로 대구 북구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4) 원고는 2013.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탁업자이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만 납부받았다.

나. 이 사건 투자신탁의 등록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는 2014. 3. 4. 금융감독원장[3]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에 관한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금융감독원장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4. 3. 5. 위 등록을 수리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redacted]광역시의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 6. 10. 원고에게 취득세 907,841,330원, 지방교육세 82,886,420원, 농어촌특별세 41,443,2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3)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87조 제3항 및 별표 20 제59호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신청서 내용 검토, 등록여부 결정 등에 관한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1) 이 사건 감면규정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면규정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까지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에서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등록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왔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도 있었기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거나 비과세관행 형성 후의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은 원고가 감면받은 세금보다 많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감면규정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문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의미는 결국 그 문언과 입법취지, 규율 대상과 내용 및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 사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경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문언 해석의 한계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사건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를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본문),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정의하면서 그 중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규정하며(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에 의하면 100분의 50이다)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구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20항)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한 많은 법률에서 '…법에 따른 ~'과 같은 형식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차용하는 경우에 쓰인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이라는 문언도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재산'의 개념을 차용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문언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친 다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자신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개업자인 경우에는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을 신탁업자에게 납입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는 별도의 감면요건을 곧바로 도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위와 같은 감면요건이 내재되어 있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감면규정과 자본시장법 등의 제 · 개정 경과

(1) 2007. 8. 3. 제정된 자본시장법이 2009. 2. 4. 시행되면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2009. 2. 4. 폐지되었는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 제2항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사모간접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탁약관을 보고하면 되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되지만(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6항, 제1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달리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구 자본시장법 제182조).

한편, 이 사건 감면규정과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등록세 감면규정의 제 · 개정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어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록세와 취득세 감경대상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었다가, 자본시장법 시행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어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록세 감경대상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일정 시한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경대상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일정 시한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되었는바, 양자 사이에는 법률명과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만 있을 뿐이고 문언상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이 2010. 3. 31.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2010. 12. 27.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 감면규정이 폐지되고 이 사건 감면규정이 위와 같이 통합된 취득세 감경대상을 규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경대상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일정 시한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른 문언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이라는 부분만 '자본시장법에 따른'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입법자가 다른 법률에서의 규정방식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단순히 표현만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2001. 8. 14. 신설	○ 제119조 제6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 제120조 제4항 : 제119조 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2003. 12. 30. 개정	○ 제119조 제6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후 2004. 12. 31. '…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2006. 12. 30. '…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소폭 개정되었다) ○ 제120조 제4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1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후 2004. 12. 31.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2006. 12. 30.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소폭 개정되었다)
2008. 12. 26. 개정	○ 제119조 제6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제120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010. 1. 1. 개정 (세율과 취득시한 부분만 개정됨)	○ 제119조 제6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제120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010. 12. 27. 개정	○ 제119조 제6항 : 삭제 ○ 제120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이러한 자본시장법 제정 및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폐지 경과, 이 사건 감면규정 등의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가 사후 보고에서 등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신탁 등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규정의 문언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입법자가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인한 규제 방식의 변화를 감안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친 다음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고 그 판매대금의 운용으로 형성된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취득세 감경대상으로 상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조세특례제한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삭제되었고, 대신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18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이관되어, 취득세 감경대상을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으로 규정하였다(즉,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자본시장법에 따른'이라는 부분이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는 지방세인 취득세에 관한 이 사건 감면규정을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감면규정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하나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정의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이라는 의미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정의를 차용하려는 취지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

부동산투자신탁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는데, 그 취지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신탁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사건 투자신탁과 같이 대규모의 집합투자재산을 조성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후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등록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는 이 사건 투자신탁에 관한 등록을 마쳤으므로,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 시점과 비교하여 이러한 등록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 판매행위 금지규정의 법적 성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구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본문), 투자신탁에 있어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그 자신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위 판매를 할 수 있으나(구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단서), 어느 경우에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되기 전까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구 자본시장법 제76조 제3항 본문),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3호).

(2) 자본시장법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둔 목적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이러한 규제 목적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달성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었다고 하여 신탁업자를 통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조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까지 고려하였던 것은 아니다(오히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조세 감면을 부인하면, 최종적으로 그로 인한 조세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투자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3) 또한, ① 구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판매약정의 효력이나 원상회복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판매약정이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사적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기대하고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들에게 지나친 공권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되어 사경제 거래주체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반환이나 부동산 취득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점, ③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행위가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자본시장법 제76조 제3항 본문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록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약정은 사법상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집합투자기구 등록 이전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약정이 사법상 유효한 이상,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통해 조달한 투자금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점(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20항), 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을지라도(제445조 제23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구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마) 행정법규 위반과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서 그러한 위반사실을 감면배제 내지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조세감면 혜택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가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본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같은 조항 단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여 관계 법령 위반을 지방세 면제의 소극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 이외에 등록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법률 해석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등록 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은 이른바 공펀드를 규제하기 위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신탁원본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당국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 판매행위를 규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 대하여 한 것은 아니지만, ①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소속 직원은 2011. 11. 1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납입받아 신탁을 설정하고 동 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비록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위 부동산 매수 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신탁재산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② 서울특별시장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날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후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등록 여부가 취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대문구청장의 문의에 대하여 2011. 12. 5. '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납입받아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업자로 하여금 재산을 운용하게 하여 투자대상자산, 즉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이후에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일반 수범자들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이에 반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3) 더욱이 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어 2015. 10. 25.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모펀드의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였다(법 제249조의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제249의20에서 등록에 관한 제182조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의 취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부가가치 창출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에서와 같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 판매행위 금지 규정 및 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사) 과세의 형평성

피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전 집합투자증권 판매행위가 있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된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되기 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었지만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부동산 취득 후에 마쳐진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 범위를 확정하면서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시기를 고려하다보니 양자의 조세 부담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시기에 좌우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황형주

판사 이아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㉒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㉔ 이 법에서 "신탁"이란「신탁법」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82조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8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230조제3항, 제238조제7항, 제2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241조, 제247조 및 제248조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제1호마목 · 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3항 · 제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및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241조, 제243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제1항 · 제2항 · 제6항은 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 · 설립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23. 제18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9. 제2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제449조(과태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위하여 이미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와 다른 경우만 제출한다)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③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 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87조 제3항 관련)

59.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 록여부 결정,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 기재 및 등록내용의 공 고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법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4. 1. 1. 법률 제12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18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2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제4항,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6에 따른 감면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27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2. 목적세

나. 지방교육세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끝>